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405

발의연월일: 2024. 7. 30.

발 의 자 : 임종득·김석기·김예지

김기웅 · 김형동 · 권성동

김상훈 · 강선영 · 김태호

김승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보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음. 또한, 국회의장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, 본회의에 보고된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하도록 하면서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범이 아닌 한, 회기가 계속되면 불체포특권이 계속 적용되고 미표결의 방법으로 체포동의안이 표류되어 임기만료 폐기가 되는 등 동료 의원들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오용됨으로써 행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국회의 대의 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불체포특권의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표

결하도록 함으로써 표결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불체포특권의 오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26조제2항 및 제112조제5항). 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"표결한다"를 각각 "기명투표로 표결한다"로 한다.

제112조제5항 본문 중 "안건"을 "안건(제26조에 따른 체포동의안은 제외한다)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표결 방법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제2항과 제112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6조(체포동의 요청의 절차) ①	제26조(체포동의 요청의 절차) ①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	②		
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			
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,			
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			
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<u>표결한</u>	<u>기명투</u>		
<u>다</u> . 다만, 체포동의안이 72시간	<u> 표로 표결한다</u>		
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			
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			
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<u>표결</u>	<u>기명</u>		
<u>한다</u> .	투표로 표결한다.		
제112조(표결방법) ① ~ ④ (생	제112조(표결방법) ① ~ ④ (현		
략)	행과 같음)		
⑤ 대통령으로부터 환부(還付)	5		
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			
관한 <u>안건</u> 은 무기명투표로 표	<u>안건(제26</u> 조에 따른 체포		
결한다. 다만, 겸직으로 인한	동의안은 제외한다)		
의원 사직과 위원장 사임에 대			
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			
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			
하지 아니하다.			
⑥ ~ ⑨ (생 략)	⑥ ~ ⑨ (현행과 같음)		